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8가합549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박종강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8,425,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증여계약을 658,425,1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8,425,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협의이혼 및 관련소송 경과

1) 원고와 C는 1989. 7. 6. 혼인하였다가 2013. 1. 31. 이혼에 합의하고, 2013. 3.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C는 2013. 1. 31. 이혼 합의 당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써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C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5. 8. 3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11. 27. 3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4) 원고는 C를 상대로 ‘원고와 C는, 재산분할로써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였는데, C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아파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잔존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484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하였다.

5) 위 법원은 2016. 6. 1.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05,10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17. 근저당권자 F은행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H),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I가 2016. 10. 27. 매각대금 1,283,66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7) 이에 원고는 관련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0390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0. 'C는 원고에게 1,28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C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위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내역

C는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3. 8. 13.부터 2015. 8.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034,782,115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위 돈 합계액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C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임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관련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283,660,000원 중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액

658,425,1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바, 피고는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중 658,42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658,425,18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658,42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임치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소송을, 다른 한편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갑 제32,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가 2013. 3. 28.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한 1,282,525,852원(2013. 8. 13.부터 2015. 8. 19.까지 사이에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 1,034,782,115원이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임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추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0140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위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 즉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지급하기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협의의 존재를 부인하고 피고에게 상당한 거액을 지급한 점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또는 임치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269호)에서 위 법원은 2019. 1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C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와의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C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C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점, ⑤ 강남세무서장은 C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임차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임차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각 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핀다.

가) 2013. 1. 31.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C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재산분할 약정일인 2013. 1.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당시부터 이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 2013. 5. 8. 및 2014. 11. 27.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 또는 각 사전구상금채권

원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3. 5. 8. 및 2014. 11. 27.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채무불이행 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2013. 5. 8. 및 2014. 11. 27. 곧바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각 손해배상채권 또는 각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C는 고의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2013. 8. 13.부터 2015. 8. 19.까지)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판단

가) 2013. 1. 31.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2013. 1. 31.부터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상 선후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5. 8. 및 2014. 11. 27. 곧바로 각 손해배상채권 또는 각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 5. 8. 및 2014. 11. 27. 곧바로 원고에게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 손해배상채권 또는 각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C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뒤, 원고에게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다2078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69195 판결 등 참조), 위 각 시점에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또는 실제 대출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각 사전구상금채권을 가지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C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C에 대한 각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행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2) C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13. 5. 8. 및 2014. 11. 27.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사실, F은행의 신청에 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가 2016.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는 2016. 10. 27. 비로소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위 시점에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지적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2013. 8. 13.부터 2015. 8. 19.까지) 이후 비로소 성립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3) 다만 원고는 C가 고의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갑 제2, 9, 12, 13, 17, 19, 20, 22, 38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각 법률관계에 기하여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2013. 5. 8. 및 2014. 11. 27. 마쳐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그로부터 약 2~3년 뒤인 2016. 10. 27. 비로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나) 2014. 11. 27. 기준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각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표] 2014. 11. 27. 기준 C의 재산내역

	재산목록		가액(원)	비고
적 극 재 산	1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84.236㎡	1,015,000,000	갑17, 갑38-1
	2	서울 송파구 J아파트 K호	760,000,000	갑9, 갑38-2
	3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 중 1/2 지분	275,000,000	갑19-1, 갑38-3
	4	영월군 N 임야 85,488㎡	102,585,600	갑 20-1, 2
	5	F은행 저축예금(O) 잔액	8,342,053	갑2 63쪽, 을8-3
	6	F은행 저축예금(P)	496	을8-3
	7	F은행 저축예금(Q)	141,529	을8-3
	8	F은행 연금신탁	42,600,000	을8-3
	9	F은행 외화보통예금(R) USD	5,457	을8-3
	10	F은행 외화보통예금(R) CAD	5,822,050	을8-3
	11	F은행 외화보통예금(R) EUR	19,713	을8-3
	12	F은행 정기적금	100,000	을8-3
	13	F은행 저축예금(S)	17,420,480	을8-3
	14	F은행 저축예금(T)	1,081,071	갑22 5쪽
	15	U증권 계좌 잔고	23,320,497	을8-4
	16	V보험 해약환급금	173,158,316	을10
	17	W증권 잔고평가금액	312,653,245	을8-1
	합계		2,737,250,507	
소 극 재 산	1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1,015,000,000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
	2	서울 송파구 J아파트 K호 관련 X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40,000,000	갑9, 갑11, 갑40-1
	3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 중 1/2 지분 관련 Y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	갑19-1, 갑40-2

	4	2013. 5. 8.자 F은행 대출금채무	300,000,000	
	5	2014. 11. 27.자 F은행 대출금채무	300,000,000	
	합계		2,305,000,000	

[한편, C의 소극재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C의 Z에 대한 9억 8,000만 원(= 2억 원 + 4억 5,000만 원 +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 역시 C의 소극재산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1, 43, 44,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Z가 C에게 2011. 9. 4. 2억 원, 2012. 12. 13. 4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Z는 이를 근거로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가압류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5.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5257호), 2016. 5. 2.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1311호)을 각 받아 각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Z가 2016. 4. 18. C를 상대로 2009. 9. 21.자 대여금 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2778호)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Z는 가장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는 1992년~2000년 ‘AA’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로 재직하였고, Z는 C의 소개로 1992년~2017년 위 회사의 재무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두 사람은 2012. 6. 25.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A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사이이다.

② Z는 이 사건 가압류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시 자신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이 아닌 채무자 C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C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인지대, 송달료나 법무사 비용 등 위 가압류 비용은 모두 C가 지급하였다. Z가 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라면, 굳이 C가 자신의 정보와 비용으로 Z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것을 도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Z는, 원고가 2015. 4. 24. C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의 제1차 변론종결일인 2015. 12. 16.로부터 13일 만인 2015.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1차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련소송의 제2차 변론종결일인 2016. 4. 6.로부터 12일 만인 2016. 4. 18. 다시 위 2차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Z와 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마친 것으로 의심된다.

④ 위 각 가압류결정은 Z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졌는데, 위 차용증에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C가 직접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 역시 가압류결정을 얻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⑤ Z는 2015. 12. 23.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15. 12. 29. C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위 1차 가압류를 신청한바, C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Z가 다시 추가로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⑥ 또한, Z는 2016. 4. 18. 비로소 C에 대한 2009. 9. 21.자 대여금 3억 3,000만 원의 존재를 주장하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신청일과 위 2차 가압류 신청일이 2016. 4. 18.로 동일한바, 위 신청 역시 강제집행 면탈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Z는 원고와 C 간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내세워 C 소유의 다른 아파트인 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도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1310호)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194,608,428원을 배당받았으나, 이후 원고가 Z를 상대로 Z가 가장채권자임을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7. 2. 9.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칠 무렵 C는 A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약 3억 원이 넘는 연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때(2013. 5. 8. 및 2014. 11. 27.)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6. 1.경부터 비로소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이에 C의 연체이자가 2016. 2. 4. 기준 약 300만 원, 2016. 3. 7. 기준 약 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마) 위 경매시점, C의 자력, 이자 지급 연체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나 각 근저당 설정 당시부터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할 생각을 가졌고,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오영, 판사 서효성, 판사 이지희

별지1

거래일자	은행	지급금액	예서	예계 지급한 내역	상대은행
13.10.07		100,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3.11.22		54,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3.12.21		100,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3.12.21		100,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3.12.21		100,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4.04.30		28,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4.10.29		47,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4.11.11		6,014,000	미재금융사업부		
14.11.13		42,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4.12.01		8,000,000	미재금융사업부		
15.01.29		50,000,000	영업부		
15.03.27		700,000	청달공		
15.03.27		2,300,000	청달공		
15.08.09		290,230	미재금융사업부		
15.08.19		4,600,000			
합 계		642,904,230			

별지 2

		증권	예서	예게 송금한 내역		
거래일자	종류	금액	상대계좌	상대방	처리점	
14.04.29	출금	48,877,885			압구정	
	합 계	48,877,885				

별지3

수표 번호	발행 은행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여계 지급한 내역		
		발행 일자	지급 은행	지급 지점	지급 일자	수표금액	지급 제시인	입금계좌	종거
		13.08.02			13.08.13	100,000,000			갑4-4
		14.01.16			14.08.24	100,000,000			갑4-5
		14.07.21			14.08.14	10,000,000			갑4-6
		14.07.21			14.08.14	10,000,000			갑4-7
		14.07.21			14.08.14	10,000,000			갑4-8
		14.07.21			14.08.14	10,000,000			갑4-9
		14.07.21			14.08.14	10,000,000			갑4-10
		14.07.21			14.08.14	10,000,000			갑4-11
		14.12.11			14.12.15	10,000,000			갑5-2
		14.12.11			14.12.15	10,000,000			갑5-3
		14.12.11			14.12.15	10,000,000			갑5-4
		14.12.11			14.12.15	10,000,000			갑5-5
		14.12.11			14.12.15	10,000,000			갑5-6
		14.12.11			14.12.15	10,000,000			갑6
		14.12.26			15.01.25	10,000,000			갑4-12
		14.12.26			15.01.25	10,000,000			갑4-13
		15.07.17			15.07.22	1,000,000			갑4-14
		15.07.17			15.07.22	1,000,000			갑4-15
		15.07.17			15.07.22	1,000,000			갑4-16
					합 계	343,000,000			

